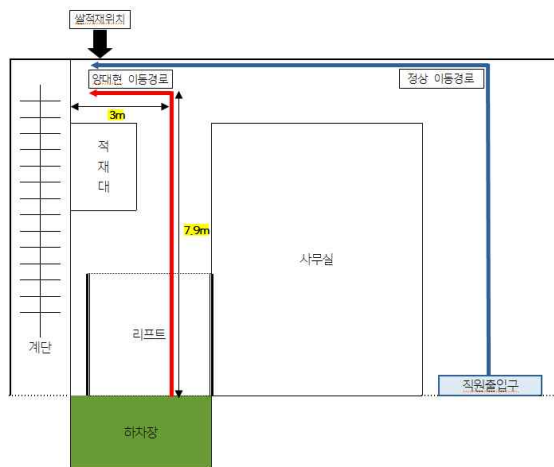


물품운반 중 일반 작업용 리프트 개구부로 떨어짐

재해 개요

2018. ○. ○. 서울시 소재 (주)00식품 상품 하차장(1층)에서 외부작업자인 △△(주) 소속 배달작업자가 쌀포대를 이동대차에 싣고 내부 창고로 운반하던 중 이동경로(하차장-보관창고)에 설치된 일반작업용 리프트 승강로 개구부로 떨어져(지하높이 2.8m) 사망

재해 사진



[그림 1] 상품운반경로 평면도



※ 운반통로로 사용된 리프트

재해발생원인

- 리프트 운반구가 이동하면 이동통로 상에 개구부가 노출되나 추락방지 조치 미 실시
- 창고로 통하는 별도의 이동통로가 있으나, 이동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개구부가 있는 일반 작업용 리프트 설치장소를 통해 통행

재해예방대책

- 이동통로상 개구부에 의한 추락방지조치 실시
 - 작업자의 떨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작업용 리프트 승강로 및 화물운반구에 출입문 설치
 - 출입문이 열려있는 경우 리프트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연동구조로 설치
- 리프트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이동경로 변경
 - 리프트는 중량물의 수직이동을 목적으로 사용하고, 작업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 금지조치 실시
 - 창고로 이동하는 경우 추락위험이 없는 별도의 통로를 이용